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5
----------	------

제출년월일 : 2002. .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현행 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관련 규정이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수도 급수 정책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요건을 종전에 시장이 시행하는 검정시험 합격자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소지자로 객관적 기준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함 (안 제8조제1항).
- 나. 종전의 검정시험수수료 및 자격증교부수수료를 삭제하고 지정서 교부수수료를 타 시와 형평에 맞게 조정함 (안 제8조제2항).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별첨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대행업자)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보유한 자(업체)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이상의 경력인정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 1.신규 1건당 10,000원
- 2.갱신 1건당 5,000원

③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한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상수도사업소 업무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업무과장 윤 은
	담당·팀장 직위·성명	업무담당 김 대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태 성 (행정 244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급수공사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이하 “검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p> <p>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p> <p>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p> <p>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2,000원</p> <p>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p> <p>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8조 (대행업자)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보유한 자(업체)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p> <p>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p> <p>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p> <p>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초급기술자이상의 경력인정자</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p> <p>1.신규 1건당 10,000원</p> <p>2.갱신 1건당 5,000원</p> <p>③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065
----------	------

제안년월일 : 2002. 9. 4.

제안자 : 도시·건설위원장의외

1. 수정이유

-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 요건 중 다소 부적합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안 제8조제1항2호 중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능에 기술자격 취득자”를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로, 동조 동항3호 중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 인정자”를 “토목·기계분야 초급 기술자 이상”으로 수정함.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1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 제3호 중 “초급기술자 이상의 경력 인정자”를 “토목·기계분야 초급 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 취득자
(단,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8조(대행업자)①(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 자격 취득자</u> 3. <u>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정한 초급기술자이상</u> <p>②~③(생략)</p>	<p>제8조(대행업자)①(원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안과 같음) 2. <u>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u> 3.<u>토목·기계분야 초급기술자이상</u> <p>②~③(원안과 같음)</p>